
회 비 규 정

1 진안군체육회 회비 규정 1 ~ 3



진안군체육회
Jinan Sports Council

진안군체육회 회비 규정

제정 2021. 8. 2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“진안군체육회” (이하 “본회” 라 한다) 정관 제4조 및 제41조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의 부과 및 징수,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비의 구분) 회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1. 회원단체 연회비
2. 이사회비
3. 기타 찬조금

제3조(회비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“회원단체 연회비” 라 함은 본회 정관에 의거 정회원단체 및 읍·면체육회에서 매 회계년도 마다 본회에 납부해야 할 회비를 말한다.
- ② “이사회비” 라 함은 본회 회장, 부회장, 이사가 매 회계년도 마다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.
- ③ “기타 찬조금” 라 함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사회단체, 동호인 등이 특별히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.

제4조(적용의 범위) 회비를 부과하는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원단체 : 본회 정관 제6조에 의거 가입 승인된 정회원단체 및 읍·면체육회
2. 이사회비 : 본회 정관 제27조에 의거 선출, 선임된 임원 (감사제외)

제5조(회비납부의 의무) 임원, 정회원단체,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회비규정 제7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비의 부과) ① 임원, 정회원단체, 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회비의 부과 기준표는 “별표 제1호” 와 같다. 다만, 임원 중 진안군청 관계자(문화체육과장), 진안교육지원청 관계자(교육장, 교육지원과장),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관계자(교장, 교감), 사무국장은 회비를 면제한다.

- ② 회원단체, 이사회비는 이사회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(회비의 징수방법) ① 회원단체 연회비, 이사회비는 매년 6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당해년도 말까지 회비를 분납할 수 있다.

제8조(회비의 수납) ① 회비의 납부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, 현금 또는 우편환 등으로도 체육회 사무국에 납부할 수 있다.

제9조(회비의 관리) ① 회비는 특별회계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당 회계년도 종료 후 잔액예산은 다음 회계년도로 귀속한다. 다만,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으로 둘 수 있다.

③ 전항의 기금 또는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.

④ 회비는 관리장부를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유지하고,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 (2021. 08. 2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회비 부과 기준표

부과대상		연 회 비	특별회비	비 고
이사회비	회 장	1,000,000원	-	-
	부 회 장	500,000원	-	-
	이 사	200,000원	-	-
회원단체 연회비	읍·면체육회	200,000원	-	-
	정회원단체	200,000원	-	-